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3호 2016. 8. 10. (수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9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0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6-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권영*)..... 4
- 하동군 고시 제2016-9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1차)..... 5
- 하동군 고시 제2016-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주암교량재가설공사)..... 8
- 하동군 고시 제2016-9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2차)..... 9
- 하동군 고시 제2016-101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에 따른 소하천지정(변경)고시.. 11
- 하동군 고시 제2016-1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박영*)..... 12
- 하동군 고시 제2016-10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윤주*)..... 13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847호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4
- 하동군 공고 제2016-850호 하동군 하수도사용료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 하동군 공고 제2016-861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1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764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
- 하동군 공고 제2016-787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57
- 하동군 공고 제2016-817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내 방법용 CCTV설치 행정예고..... 58
- 하동군 공고 제2016-82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화정독골 저수지 외 2개소) 62
- 하동군 공고 제2016-826호 2016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65
- 하동군 공고 제2016-843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66
- 하동군 공고 제2016-862호 하동포구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입찰 공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16-864호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81

회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0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58-10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63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980-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58-10	20160707	2007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326-1	경상남도 하동군 옥 종면호계천로 210 (주1)	20160707	20070618	도로구간이 호계천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하천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주1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01-9, 80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정동길 26	20160707	20070618	정동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183-1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중마길 175	20160707	20080402	중마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05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냉정길 29	20160707	20080402	냉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228-2, 227-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594-12	20160707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 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29-41, 389-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65	20160707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하 동 군 공 보

(4) 제 463 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96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권영신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03, 103동 401호(송보파인빌)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613(구)		
	면적	40.0㎡		
	기간	2016.7.13. ~ 2021.7.12.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6-97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1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당도길 41-3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463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1019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당도길 41-3	20160715	20070618	당도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54, 64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길 12-16	20160715	20070618	예부터 서당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23-5, 산123-4	경상남도 하동군북 천면상촌길146-12 (주1)	20160715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주1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8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22-11	20160715	20070618	덕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6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13-8	20160715	20070618	진교중심가도로로써 진교중앙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100-11	경상남도 하동군횡 천면전대2길128 (주1)	20160715	20080402	법정리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주1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100-1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2길 126	20160715	20080402	법정리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61-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68-2	20160715	20080402	서촌이라는 자연마을명에 고유지명을 합성하여 서촌섬백이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07-1, 108-2, 107-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27	20160715	2008040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758-1, 755	경상남도 하동군옥 종면청수길88-61 (부1)	20160715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부1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1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35-148	20160715	20080402	큰은행나무로 가는길로 은행나무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615-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조금길 28	20160715	20080402	옛날 나루터 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84-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소송음달길 52	20160715	20080402	소송의 음달쪽에 있는 위아래 마을로 옛지명 반영	

하 동 군 공 보

(7) 제 463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93-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2길 27	20160715	20090302	기차가 지나가는 굴다리가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에 일련번호방식의 두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6	20160715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2	20110729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하 동 군 공 보

(8) 제 463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9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하동군수 (건설교통과)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046-13(구), 인근지번 : 정서리 630(답)		
	면적	172.0㎡		
	기간	2016.7.26. ~ 2046.7.25.		
	목적	주암교량 재가설공사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6-9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2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2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29-17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463 호

성명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고지 방법	소유자 구분
이명우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2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29-17	2007-06-18	모암이라는 자연 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29-15	1차	소유자
임종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773, 77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정금대비길 79	2009-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79	1차	소유자
정해운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54-3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3-14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 심으로부터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01-2	1차	소유자
김광수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147, 114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91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 까지 도로가 명사 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2-7	1차	소유자
하현숙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31-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78-1	2008-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70, 201동 1204호 (전하동)	1차	소유자
강덕자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2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19	2008-04-02	옥종면의 중심도로 로서 옥종중앙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73-17 (협성하우스컨설팅)	1차	소유자
김경민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47-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36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 단성면) 활용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36	1차	소유자
김찬수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42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325	2009-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307동2101호 (화명동, 화명대림 타운)	1차	소유자

하동군 고시 제2016-101호

소하천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하 동 군 수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남해	건너물천	당초	송문리 산130-1	송문리 산187-2	688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한 변경
		변경	송문리 산130-1	송문리 산187-4	756	

하 동 군 공 보

(12) 제 463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03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박영미	주소	전남 광양시 광영로 141, 105동 406호(광영동, 현대아파트)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산31-1(구)		
	면적	36.0㎡		
	기간	2016.8.2. ~ 2021.8.1.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04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윤주명	주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107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815		
	면적	31.0㎡		
	기간	2016.8.5. ~ 2021.8.4.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관내 임시시장의 개설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안1조)
 - 나. 적용범위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까지 추가 적용(안3조)
 - 다. 상위법에 규정된 임시시장 시설기준과 조례상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일치시켰으며(안4조)
 - 라. 상위법에 맞게 임시시장의 등록규정을 신고로 수정(안5조)
 - 마.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19일까지 하동군(경제수산과, 전화 880-2194, FAX 880-219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하동군 임시시장 개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16) 제 463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제안이유

- 관내 임시시장의 개설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안1조)
- 나. 적용범위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까지 추가 적용(안3조)
- 다. 상위법에 규정된 임시시장 시설기준과 조례상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일치시켰으며(안4조)
- 라. 상위법에 맞게 임시시장의 등록규정을 신고로 수정(안5조)
- 마.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7조)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점포등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동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하동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등록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해당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p>
<p>제3조(적용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된 시장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점포등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4조(등록기준 등) <신 설></p>	<p>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p>
<p>① 임시시장의 등록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설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된 시장의 건축물 준공 시까지로 한다.</p>	<p>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현행 ②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설등록 및 등록증 발급) ① <u>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계획서</u> 2. <u>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함)</u> 3. <u>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u> <p>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2. <u>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u> 3. <u>사업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4. <u>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u> 5. <u>업종구성</u> 6. <u>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7. <u>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u> 	<p>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u>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u> 2. <u>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u> 3. <u>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u> 4. <u>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u> <p><삭 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 등록증발급대장 및 임시시장개설등록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② ----- 신고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④ <u>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동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하동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제6조(영업개시 등의 신고) ① <u>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업을 개시한 경우</u> 2. <u>매장면적을 변경하는 경우</u> 3. <u>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u> 4. <u>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u> 5. <u>영업개시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u> 	<p><삭 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개시등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장 현황(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휴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p>제7조(시장관리인 지정) ① 군수는 임시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인은 시장변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제8조(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의 책무) ① 임시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점 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 및 입점 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p><삭 제></p> <p>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p> <p>② 임시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시장안의 입점 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개설등록의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등록을 한 경우</p> <p>2.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임시시장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p> <p>제10조(청문) (생략)</p>	<p>4. 상거래 질서의 확립</p> <p><삭제></p> <p>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 ----- -----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p> <p>1. -----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p> <p>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p> <p>제8조(청문) (현행 10조와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6-850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에 규정한 내용중 주민불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행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점용허가만 받도록 하고, 상위 조례의 개정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재정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 ① 하수도 사용조례
 - 가.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 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으로 하고 준공검사 조항인 제1항을 삭제(제6조 1항)
 - 나. 하동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의의신청 처리기간 신설 (30조제2항)
 - 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을 재정비(제31조제1항)

②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가. 상위 조례 폐지에 따른 조항삭제(제2조~제5조, 제9조)

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분할 납부내 대한 세부 기준신설
(제16조의 2)

다. 조례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요율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제17조 제1항)

라. 기타 이탈자 및 상위 조례화 연계한 조문번호 수정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21일까지 하동군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담당,
전화055-880-2602, FAX 055-880-2599, e-mail yg4616@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6조제2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계산액”을 “개산액”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다목 중 “신고량.”를 “신고량”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인정이”를 “산정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나목 중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2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463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① <삭제></p> <p>(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u>계산액</u>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계산액</u>----- ----- ----- -----</p>
<p>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p> <p>1. (생략)</p> <p>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p> <p>가.·나. (생략)</p>	<p>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u>신고량</u>, <u>하천수·온천수·해수</u> 그 밖의 경우에는 <u>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u></p> <p>3. (생략)</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u>인정</u>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p> <p>② ~ ⑤ (생략)</p>	<p>다. ----- ----- ----- ----- <u>신고량</u> <후 <u>단 삭제</u>></p> <p>3. (현행과 같음)</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 <u>산정</u>이 ----- ----- ----- ----- -----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 5. (생 략)</p> <p>6.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p> <p>가. (생 략)</p> <p>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u>인가·허가 또는 승인</u> 전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u>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② (생 략)</p> <p>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제1호에서 규정한 <u>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u></p> <p>가. <u>국공립 연구기관</u></p> <p>나. <u>대학교 부설 연구기관</u></p> <p>다.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u>측정 대행자(수질분야)</u></p>	<p>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이의신청)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u>100분의 3에</u>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u><단서 신설></u></p> <p>②·③ (생략)</p> <p>제32조(권한의 위임) <u>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u> <u>2. 제4조 규정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u> <u>3. 제7조 규정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u> 	<p>제30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 ----- ----- ----- <u>-100분의 2에 -----</u> ----- . <u>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6항제2호 중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 규정”을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00분의 5의”를 “100분의 2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사의 연기사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암반 등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u> 2. <u>도로 굴착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u> 3. <u>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u> 4. <u>그 밖에 군수가 공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p><삭 제></p>
<p>제3조(배수설비설치 신청)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허가나 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삭 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 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u></p> <p><u>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든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5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 함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옥내 배수설비공사</u> <u>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u> 	<p><u><삭 제></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의 준공 검사)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p>	<p><삭 제></p>
<p>제10조(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상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p>②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 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p> <p>④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의 같이 물이 사용량과 오수(汚水)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다.</p>	<p><삭 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 제4조----- ----- ----- -----.</p>
<p>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⑦ (생 략)</p>	<p>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 26조 및 제41조 ----- ⑦ (현행과 같음)</p>
<p>제16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 다. ② (생 략) <신 설></p>	<p>제16조(납부고지서) ① ---- 제15조 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u>100분의 5의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p> <p>② · ③ (생략)</p> <p>제1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u>제17조의 규정에 의거</u> 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다른 분납요율은 1회 30퍼센트로 한다.</u></p> <p>③ <u>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u></p> <p>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 ----- ----- -----<u>100분의 2의</u> ----- -----<u>.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감면) ① ----- ----- <u>제29조에 따른</u> -----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제31조제1항----- -----.</p>
<p>제20조(재결 및 통지)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20조(재결 및 통지) ① 제19조----- ----- ----- -----.</p>
<p>② (생 략) 제22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 ---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p>

(40) 제 463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6 - 861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 산림청 규제개선 협력대상 과제 정비

3. 주요내용

-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개정(조례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2조의2)
 -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연 3~6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으로 개정
 - 단서조항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 제1항, 제82조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삭제

- 공유토지 분할 시 토지가액 평가기관의 명확화(조례 제65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 토석채취료 산정 시 가격평정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대상기관의 명확화(조례 제29조 제4항)
 -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 공유재산 토석가격 산정 방법 개선(조례 제29조 2항, 3항)
 -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을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로 개정

4. 의견제출

-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303 / FAX 055-880-2279, ttakkom@korea.kr)에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을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6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6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제62조의2 중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u>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u> ③ 제2항의 <u>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⑤ (생 략)</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u><단서 삭제></u> ③ -----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 ----- ④ ----- ----- <u>감정평가업자</u> ----- ----- ----- ----- ----.</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u>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22조제2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u></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 ③ (생 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u>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u> ③ ----- ----- -----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p>
<p>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1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4. (생 략) ② (생 략)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2조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u>에 의뢰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 ----- ----- ----- <u>시중은행</u>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단서 삭제></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 ----- -----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 <u>감정평가업자</u>-----.</p>

경상남도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가격평정)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 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u>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p>	<p>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u> ----- ----- -----.</p>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자체기금설치 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조례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제1항제3호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장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 삭제(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880-2584, FAX 880-2569, e-mail tigerbelt@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54) 제 463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생략) <신 설></p>	<p>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 4. (생략) ② · ③ (생략)</p>	<p>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6-787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 음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6. 7. 13.
2. 신조 및 폐기사유 : 환경보호과수질개선특별회계 일상경비출납원 개설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7. 7. 13.(공고 후)

2016년 7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6-817호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군 보건진료소 내 보안 및 사건·사고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신규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

하 동 군 수

1. 행정예고 및 목적

가. 사 업 명 : 하동군 보건진료소 CCTV 설치

나. 사업목적

- 보건진료소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건·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원환자의 신변보호 및 진료소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7. 21 ~ 2016. 8. 05(15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 붙임참조

6.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하동군 보건진료소 내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 8.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보건소(보건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6620)

다. 보내실 곳 : (우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하동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하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880-6614)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방법용 CCTV 설치장소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양식)1부. 끝.

하 동 군 공 보

(60) 제 463 호

【붙임 1】

방법용 CCTV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위 치	카메라수	비고
1	화개면 범왕길 8	범왕보건진료소	2	
2	화개면 삼진강대로 3748-10	부덕보건진료소	2	
3	약양면 서로 656	동매보건진료소	2	
4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보건진료소	2	
5	적량면 칠성로 415	삼화보건진료소	2	
6	횡천면 경서대로 965-3	남산보건진료소	2	
7	횡천면 전대1길 129-1	전대보건진료소	2	
8	양보면 섬백이길 16	우복보건진료소	2	
9	고전면 지소1길 22	성천보전진료소	2	
10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고하보건진료소	2	
11	금남면 대왕골길 6	덕천보건진료소	2	
12	금남면 상촌마을길 23	중평보건진료소	2	
13	진교면 감정길 7	갑정보건진료소	2	
14	북천면 화정길 45	화정보건진료소	2	
15	북천면 경서대로 2015-1	방화보건진료소	2	
16	청암면 청학로 2196	목계보건진료소	2	
17	옥종면 돌고지로 1096	위태보건진료소	2	
18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35	북방보건진료소	2	

【붙임 2】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하동군 보건진료소 내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6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6. 7. 26. ~ 8. 15.(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6. 7. 26. ~ 8. 15.(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고 (m)			
화정독골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640-1 일원	760,000	9,250	8.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하락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37 일원	150,000	30,660	15.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감나무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27 일원	300,000	11,100	9.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남 하동군 읍내리 군청로 23 건설교통과
- 전 화 : 055) 880-2514
- 팩 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건 제 출 서

공 고 명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저 수 지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6 - 826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된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고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6.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6. 7. 29.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5필지

(단위 : 원/m²)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당초결정지가	정정지가	비 고
1	하동읍 읍내리 222-14	대	459,800	690,000	
2	하동읍 비파리 378-1	대	160,100	237,100	
3	화개면 용강리 산8	임	826	898	
4	북천면 직전리 산54	임	298	352	
5	청암면 평촌리 257-1	전	11,300	8,020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7 월 29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6-843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하 동 군 수

1. 결산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합 계	448,642,939,962	447,348,330,417	352,654,861,573	94,693,468,844	
일반회계	419,240,056,452	417,706,026,026	332,918,784,751	84,787,241,275	
특별회계	29,402,883,510	29,642,304,391	19,736,076,822	9,906,227,569	

1-1.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448,642,939,962	451,015,623,250	447,348,330,417	3,667,292,833	99.7	99.2
일반회계	419,240,056,452	420,768,873,977	417,706,026,026	3,062,847,951	99.6	99.3
특별회계	29,402,883,510	30,246,749,273	29,642,304,391	604,444,882	100.8	98.0

1-2.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	비율		
					㉡/㉠	㉢/㉠	㉣/㉠
합 계	448,642,939,982	352,654,861,573	58,820,373,694	37,167,704,695	78.6	13.1	8.3
일반회계	419,240,056,452	332,918,784,751	55,332,708,864	30,988,562,837	79.4	13.2	7.4
특별회계	29,402,883,510	19,736,076,822	3,487,664,830	6,179,141,858	67.1	11.9	21.0

1-3.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94,693,468,844	44,226,450,212	10,479,816,251	0	3,670,526,834	36,316,675,547
일반회계	84,787,241,275	41,275,949,682	9,942,651,951	0	3,598,002,974	29,970,636,668
특별회계	9,906,227,569	2,950,500,530	537,164,300	0	72,523,860	6,346,038,879

2. 일반회계 결산

2-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㉔	징수결정액 ㉕	수 납 액 ㉖	미수납액 ㉗=㉕-㉖	비율	
					㉖/㉔	㉖/㉕
합 계	419,240,056,452	420,768,873,977	417,706,026,026	3,062,847,951	99.6	99.3
지 방 세	16,510,000,000	18,065,005,180	16,945,133,590	1,139,871,590	102.7	93.7
지 방 세	16,510,000,000	18,065,005,180	16,945,133,590	1,139,871,590	102.7	93.7
세 외 수 입	12,623,092,000	18,439,674,972	16,516,698,611	1,922,976,361	130.8	89.6
경상적수입	7,083,929,000	6,650,069,804	6,629,269,293	20,900,511	93.6	99.7
임시적수입	5,539,163,000	11,789,605,168	9,887,429,318	1,902,175,850	178.5	83.9
지방교부세	161,884,000,000	166,216,504,000	166,216,504,000	0	102.3	100
조정교부금 등	21,691,000,000	21,386,760,740	21,386,760,740	0	98.6	100
보 조 금	128,785,111,000	119,847,468,770	119,847,468,770	0	93.1	100
국고보조금	95,882,636,000	87,873,566,160	87,873,566,160	0	91.6	100
도비보조금	32,902,475,000	31,973,902,610	31,973,902,610	0	97.2	100
보전수입등	77,746,853,452	76,793,460,315	76,793,460,315	0	98.8	100

2-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비율		
					㉣/㉠	㉣/㉡	㉣/㉢
합 계	419,240,056,452	332,918,784,751	55,332,708,864	30,988,562,837	79.4	13.2	7.4
일반공공행정	20,168,950,000	17,388,020,192	405,572,000	2,373,357,808	86.2	2.0	11.8
공공질서및안전	7,739,260,000	5,815,206,800	1,501,419,000	422,634,200	75.1	19.4	5.5
교 육	4,210,400,000	3,435,225,450	0	775,174,550	81.6	0.0	18.4
문화및관광	47,133,157,800	33,326,648,709	12,830,506,490	976,002,601	70.7	27.2	2.1
환경보호	20,541,087,000	17,091,830,000	2,716,156,892	733,100,108	83.2	13.2	3.6
사회복지	69,211,328,000	65,091,816,736	1,278,696,000	2,840,815,264	94.1	1.8	4.1
보 건	8,264,738,000	7,052,621,812	110,000,000	1,102,116,188	85.4	1.3	13.3
농림해양수산	94,730,644,350	75,905,655,945	9,654,354,140	9,170,634,265	80.1	10.2	9.7
산업·중소기업	22,386,859,700	11,730,902,807	7,916,612,940	2,739,343,953	52.4	35.4	12.2
수송및교통	25,030,391,070	15,065,005,910	9,257,858,500	707,526,660	60.2	37.0	2.8
국토및지역개발	44,015,875,532	33,586,406,350	9,661,532,902	767,936,280	76.3	22.0	1.7
예 비 비	7,221,411,000	0	0	7,221,411,000	0.0	0.0	100
기 타	48,587,954,000	47,429,444,040	0	1,158,509,960	97.6	0.0	2.4

3. 특별회계 결산

3-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㉔	징수결정액 ㉕	수 납 액 ㉖	미수납액	비율	
					㉖/㉔	㉖/㉕
합 계	29,402,883,510	30,246,749,273	29,642,304,391	604,444,882	100.8	98.0
상수도사업	8,167,608,900	8,202,419,220	8,185,276,170	17,143,050	100.2	99.8
의료급여기금조성	817,424,000	813,414,860	813,414,860	0	99.5	100.0
저소득주민생활	470,462,000	731,050,885	418,679,723	312,371,162	89.0	57.3
주민소득지원자금	863,989,000	1,059,730,290	784,799,620	274,930,670	90.8	74.1
농공지구조성사업	105,045,000	104,672,769	104,672,769	0	99.6	100.0
발전소주변지역	4,628,255,000	4,944,992,200	4,944,992,200	0	106.8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657,774,000	3,656,696,578	3,656,696,578	0	100.0	100.0
농업재해복구자금	1,215,490,000	1,239,325,385	1,239,325,385	0	102.0	100.0
수질개선기금사업	9,476,835,610	9,494,445,086	9,494,445,086	0	100.2	100.0

3-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㉔	지 출 액 ㉕	다음년도 이월액 ㉖	집행잔액 ㉗	비율		
					㉕/㉔	㉕/㉔	㉕/㉔
합 계	29,402,883,510	19,736,076,822	3,487,664,830	6,179,141,858	67.1	11.9	21.0
상수도사업	8,167,608,900	6,023,491,030	1,026,204,300	1,117,913,570	73.7	12.6	13.7
의료급여기금조성	817,424,000	785,579,960	0	31,844,040	96.1	0.0	3.9
저소득주민생활	470,462,000	20,000,000	0	450,462,000	4.3	0.0	95.7
주민소득지원자금	863,989,000	10,149,000	0	853,840,000	1.2	0.0	98.8
농공지구조성사업	105,045,000	32,512,540	0	72,532,460	31.0	0.0	69.0
발전소주변지역	4,628,255,000	2,813,518,950	0	1,814,736,050	60.8	0.0	39.2
중소기업육성기금	3,657,774,000	3,560,200,492	0	97,573,508	97.3	0.0	2.7
농업재해복구자금	1,215,490,000	1,226,200	0	1,214,263,800	0.1	0.0	99.9
수질개선기금사업	9,476,835,610	6,489,398,650	2,461,460,530	525,976,430	68.5	26.0	5.5

4.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지 출 액	
합 계	13,094,896,814	6,078,849,595	7,411,832,865	1,332,983,270	19,173,746,409
재난관리기금	446,953,630	160,828,490	1,318,562,570	1,157,734,080	607,782,120
식품진흥기금	6,649,300	14,064,170	17,064,170	3,000,000	20,713,470
농가경영회생기금	2,756,535,976	71,469,800	71,469,800	0	2,828,005,776
사회복지통합기금	9,879,154,268	799,652,560	970,701,750	171,049,190	10,678,806,828
옥외광고정비기금	5,603,640	△1,152,260	47,740	1,200,000	4,451,380
투자유치진흥기금	0	3,031,339,720	3,031,339,720	0	3,031,339,72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2,002,647,115	2,002,647,115	0	2,002,647,115

5.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 환 소 멸 액	
합 계	5,796,710,404	1,163,311,860	2,533,671,982	4,426,350,282
일반회계	2,310,283,200	0	0	2,310,283,200
특별회계	3,486,427,204	1,163,311,860	2,533,671,982	2,116,067,082
저소득주민생활	420,662,314	76,702,300	73,048,202	424,316,412
주민소득지원자금	283,130,670	40,000,000	28,200,000	294,930,670
발전소주변지역	2,782,634,220	1,046,609,560	2,432,423,780	1,396,820,000

6. 채무 결산

6-1. 채무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해연도 현재액
합 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6-2. 보증채무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7. 공유재산 결산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46.740	1,315,164,225,176	1,764	24,281,324,779	1,830	18,061,107,392	46,674
행정재산	45.680	1,296,930,082,293	1,729	24,007,761,677	1,813	17,860,155,175	45,596	1,303,077,638,795
일반재산	1,060	18,234,192,883	35	273,563,102	17	200,952,217	1,078	18,306,803,768

8. 물품 결산

(단위 : 원)

구 분	정수	전년도말 잔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잔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61	401	4,436,279,470	29	524,842,000	25	198,771,000	405	4,762,350,470
업무용	761	401	4,436,279,470	29	524,842,000	25	198,771,000	405	4,762,350,470

9. 재무제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당해연도	1,734,691	10,375	1,724,316	346,974	288,855	(58,119)
전년도말	1,678,209	9,547	1,668,662	342,166	276,531	(65,635)
증감	56,482	827	55,654	4,808	12,324	7,516

(74) 제 463 호

하동군 공고 제2016-862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하동포구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 나.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용 도	허가면적	예정가격(년/원)	비고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47-59 (하동포구공원내 주차장)	푸드트럭 영업장소(1대)	10㎡ (5m×2m)	2,110원	부가가치세 (VAT)포함

-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간
- 라. 영업시간 : 10:00 ~ 22:00[동절기(12월~3월) 10:00 ~ 18:00]←협의하에 조정가능
- 마.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16.8.8.(월) 10:00 ~ 2016.8.16.(화)18: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2016.8.17.(수) 10:00	하동군(기획조정실)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자(법인 제외) 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
에 등록을 필한자.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라. “온비드”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이며,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 시스템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
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인 경우로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및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

- 가. 유효한 입찰로(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표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를 통해 게시됩니다.

(76) 제 463 호

7.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사용허가 신청서 【입찰기관비치】
- ② 신분증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나. 낙찰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낙찰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허가서를 발부 받아 우리 군(보건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전 1년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만약 미납 시에는 낙찰을 무효화 하고 2순위 후보자에게 승계됩니다.

-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를 1년간 단위로 매년 정산하여 사용료로 부과하고, 사용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8.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입찰참가자는 표시재산의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문의전화 : 1588-5321(온비드 콜센터)

-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바.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의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기획조정실)(☎ 055-880-29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

하 동 군 수

입찰 유 의 서

1. **사용허가 시설물** 하동포구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장
2. **시설물의 위치** 경남 하동군 목도리 47-59 하동포구공원(주차장)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표시재산의 현장을 직접 확인
4. **운영자의 의무**
 - 가. 허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 책임
 - 나. 이용객에 대한 친절
 - 다. 기타 우리군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제반사항의 준수사항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전자입찰 공고 내용 정정 등**
 - 가. 하동군이나 온비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온비드와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공고 합니다.
 - 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절차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연간사용료 납부

- 가.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최고가격을 제시하여 결정된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으로 결정하며, 영업전 사용료를 일시불로 사용개시일 전에 지정된 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 나.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붙임 사용허가조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다. 사용료 외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입찰 전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유동인구 파악, 장소, 주변의 상권을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푸드트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하동군에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마. 사용자는 본 푸드트럭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만약 적발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바.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운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사. 입찰유의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하동포구공원 내 푸드트럭 위치도



하동군 공고 제2016-864호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6년 8월 11일 ~ 8월 31일
- 장 소 : 하동군청 민원과,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하동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하동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6. 8. 10

하 동 군 수